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6도13473 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나. 국가정보원법위반 다. 허위공문서작성 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마. 위증 바. 증거인멸 사. 직무유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특별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정태원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8. 19. 선고 2026노135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1.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제1차장 공소외 1로부터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한다)가 공소외 2, 공소외 3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것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공소외 1에게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2024. 12. 6.부터 2024. 12. 10.까지의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의 내용 및 취지

(1)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국정원의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에 따라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21조 제1항은 국정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이하 통틀어 '국정원장 등'이라 한다)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정치관여 행위'라 한다)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법은 정치관여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있다. 국정원 직원은 상급자로부터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국정원 직원이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비밀엄수의무 적용이 배제되고, 국정원장은 신고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된다(제11조 제4항, 제5항, 제6항). 이는 국정원 직원이 상급자의 정치관여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궁극적으로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2)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으로서 그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국가 기밀에 대한 보안 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국가정보원법 제2조, 제4조). 직무의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고, 원장을 정점으로 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아래 통일적·체계적인 직무수행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법적 지위와 직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정원이 보유한 비공개정보와 조직적 영향력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합하여 정치적 일탈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한다.

국가정보원법이 정치관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벌금형이 없는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하는 한편, 상급자의 정치관여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 및 거부권 등 제도를 둔 것은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은 국정원의 조직적·집단적 역량이 국내정치 개입에 전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

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2항 제2호가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의 구성요소 및 판단 기준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 중 하나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정원장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의 정치관여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 직위를 이용하여'란 국정원장 등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국정원장 등의 지위와 결부되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뜻한다. 국정원장 등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국정원장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의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문제 되는 의견 또는 사실의 내용, 표현 방법, 공표의 경위,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거나 명시적인 가치판단적 내용 없이 사실관계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명하는 사실관계의 성격, 행위의 목적과 동기,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그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있다면, 정치관여 행

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27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윤석열의 국정원에 대한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 사실 및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보고 사실을 부정하는 취지의 기자회견 및 인터뷰를 진행하고 문자메시지 및 서한문을 발송함으로써 국정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윤석열 및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의견을 유포하는 등 정치관여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기자회견 등은 피고인 개인 자격이 아닌 국정원장으로서의 지위와 결부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직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자회견은 피고인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직후 이루어졌으므로, 시간적·장소적으로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보고라는 직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사건 인터뷰도 피고인이 국정원장으로서 공소외 1로부터 받은 보고와 인사조치의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국정원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국정원 명의로 전송되었다. 이 사건 서한문은 국정원장 비서실 직원 등의 검수 과정을 거쳤고, 국정원 내부 전산망 및 이메일, 국정원 직원을 통해 발송되었다.

(2) 이 사건 기자회견 등은 윤석열 및 그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의견을 유포한 것으로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자회견 등의 주된 내용은 '윤석열은 공소외 1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고 공소외 1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

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그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하여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므로, 그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 기자회견 등은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고, 윤석열이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하였는지는 1차 탄핵소추안 가결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정치적 쟁점 중의 하나였다. 현직 국정원장이 기자회견, 인터뷰를 하거나 전·현직 직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개인의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주요 정치적 현안에 관하여 이례적인 방식으로 허위의 내용을 공포하였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표결에 불참하였으며, 그에 따라 1차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성립,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및 엄격한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증거인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대통령경호처장 공소외 4와 공모하여 공소외 1이 사용하는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이하 '이 사건 비화폰'이라 한다)의 통화기록 등을 삭제함으로써, 윤석열의 내란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비화폰에 저장된 공소외 1과 윤석열 사이의 통화기록은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이 공소외 1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하였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수사를 개시하였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비화폰을 관리하는 공소외 4와 의사연락 아래 통화기록 등을 삭제하였는바, 증거인멸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나) 당시 이 사건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어 그 화면에 표시된 사용자 아이디(ID), 공소외 1과 윤석열 사이의 통화기록이 노출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음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4항, 보안업무규정 제38조 제1호 또는 제4호가 정한 보안사고에 해당하고, 보안업무규정 제38조의2에 따른 보안조치로서 통화기록 등을 삭제한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그 주장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화폰 화면 노출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사고에 해당한다고 공소외 4에게 확인해줌으로써, 공소외 4가 보안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근거와 명분을 제공하였는바,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라)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비화폰의 통화기록 등을 삭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다.

비화폰 사용자 아이디(ID), 통화기록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정보가 표시된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었더라도, 보안업무규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공소외 1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이 사건 비화폰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보안업무규정 제38조 제1항 제4호의 보안사고 해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의 행위 동기나 목적, 구체적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법익균형성 등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그 밖에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인멸죄의 '고의' 및 '타인'의 형사사건, 정당행위 및 법률의 착오,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2025. 1. 22.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내란국조특위'라 한다)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1로부터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마.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2025. 1. 24. 내란국조특위 소속 공소외 5 의원으로부터 '국정조사 요구자료' 질의를 받고, 2025. 2. 3. 윤석열이 공소외 6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국정원장 명의의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성립, 불고불리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바. 위증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2025. 2. 13.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헌법재판소 2024헌나8) 제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2024. 3. 말 또는 4. 초순경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등과 회동할 당시 윤석열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군이 나서야 한다'는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② 비상계엄 당일인 2024. 12. 3.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보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이를 전달받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공소외 1로부터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

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죄의 성립,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특별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무유기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국가정보원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2025. 1. 24. 내란국조특위 소속 공소외 5 의원으로부터 '국정조사 요구자료' 질의를 받고, 2025. 2. 3. ① 자신은 윤석열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내용, ②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이 비상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본인의 자켓 상의에서 꺼내 읽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③ 윤석열이 기획재정부장관 공소외 7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국정원장 명의의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거나 허위공

문서작성 및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위증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2025. 2. 13.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헌법재판소 2024헌나8) 제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비상계엄 당일인 2024. 12. 3. 대통령 집무실에서 원탁 위에 놓여있던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② 윤석열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거나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라. 2025. 2. 20. 정치관여 행위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내란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윤석열 및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정보원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_____

주 심 대법관 오석준 _____

대법관 이숙연 _____